

제8장 서비스 무역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가.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 2)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라. **법인**이란 회사, 신탁회사, 파트너십, 합작투자, 1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마.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 2)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아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1)목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바. **법인**은,

- 1)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 2)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

하여 지배된다. 또는

-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 관계에 있다.**

사.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1)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또는
- 2)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양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다.

- 1) 서비스의 구매, 지급 또는 이용
-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또는
- 3)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당사국의 인의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주재

자. 서비스의 독점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적 또는 사적 인을 말한다.

차.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중국에 대하여, 중국법에 따른 중국의 국민이며,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 2) 한국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한국의 국민

카.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타.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 1)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 부속서 8-가의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 허표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의 하나 이상 또는 모든 하위분야, 또는
- 2) 그 밖에, 서비스의 모든 하위분야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의 전체

파.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하.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 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과 같이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그 안에서,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의 운영 또는 선박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사용을 통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 2)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 너.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근거에서 공급되지도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 더.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¹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 러.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 머. 서비스 무역이란 다음의 서비스 공급을 말한다.
 - 1)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 2)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 3)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또는
 - 4)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 버. 운수권이란 운항 지점, 취항 항로, 운송의 형태, 운송 능력, 부과 운임 및 그 조건, 그리고 개수, 소유권 및 통제 등과 같은 기준을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을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 또는 사용료를 위하여 운영 및/또는 승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하기 위한 정기 및 비정기 서비스를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제8.2조 적용범위

¹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와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1. 이 장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8.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 나.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 다. 연안해상운송 서비스
 - 라.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항공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운수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예약시스템 서비스
 - 마. 제9.14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², 그리고
 - 바.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그 영역에서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 및 약속된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³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8.3조 및 제8.4조는 정부 기관에 의하여 정부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상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구매되는 서비스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² 그룹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8-가(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다.

³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3조 시장접근

1. 제8.1조에 정의된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8-가⁴에 포함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 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⁵
-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 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외국인의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4조 내국민 대우

1.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이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⁶

⁴ 당사국이 제8.1조(머호1)목에 언급된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8.1조(머호3)목에 언급된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 송금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⁵ 이 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⁶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떠한 당사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인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8.5조 추가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자국이 행하는 구체적 약속을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그리고
-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2. 제8.3조 및 제8.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3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에 대하여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과 합치되게 행하여진 구체적 약속에 따라 부여된 대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또는 더 차별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⁷

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⁷ 이 항은 이 장에 따라 부속서 8-가에만 적용 가능하다.

제8.7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영향을 받은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당사국의 헌법 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불합치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격 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그 결과를 이 협정에 통합하기 위하여 GATS 제6조제4항에 따른 이러한 조치에 대한 규율에 관한 협상의 결과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양 당사국은 이러한 규율은 그러한 요건들이 특히 다음과 같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 제4항에 언급된 규율의 통합이 진행 중인 때에는 그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 요건과 기술표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
- 2) 그러한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당사국이 제5항가호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적 표준이 고려된다.⁸

6.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가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8.8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공표한다. 서비스 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서명국인 국제협정도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정보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제8.14조에 언급된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이 장에 따른 자국의 구체적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새로운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도입 또는 기존의 법, 규정 또는 행정지침에 대한 모든 변경에 관하여 즉시 그리고 적어도 매년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제1항의 의미 내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자국의 조치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의 통보 요건에 따른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2년 내에 설치된다.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한 어떠한 조치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고려하는 경우 제8.14조에 언급된 서비스무역위원회에 그러한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8.9조 인정

⁸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적어도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회원의 관련 기구에 대하여 그 회원자격이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4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또는 권한 있는 관련 기관 간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2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이 협정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부터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자국의 기존 인정조치를 알리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나. 제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협상이 실질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이 그 협상에의 참여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린다. 그리고

다. 새로운 인정조치를 채택하거나 현행 인정조치에 중요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무역위원회에 알리고, 그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6.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 무역과 직업의 관행에 대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10조 지불 및 송금

1. GATS 제12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에 상정된 상황 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이하 “협정 조문”이라 한다)과 합치하는 교환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 조문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GATS 제12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그러한 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1조 혜택의 부인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때
- 나. 혜택 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때, 또는
- 다.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 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때

제8.12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의 의무 및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으며 또한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게 관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는 당사국이 공식적이거나 사실상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고, (나) 자국 영역에서 그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또한 적용된다.

제8.13조 보조금

1. 양 당사국은 GATS 제15조에 따라 합의된 모든 규율에 비추어 그러한 규율의 이 협정의 통합을 위하여 서비스 무역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규율의 문제를 검토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자국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제8.14조 서비스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서비스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

나. 서비스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의 확인 및 권고, 그리고

다.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협의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제8.15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8.12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써 서비스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제거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의 비밀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8.16조 접촉선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접촉선의 세부내용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세부내용에 대한 모든 변경을 신속히 서로에게 통보한다.